

수원지방법원 2021. 1. 14 선고 2020나435 판결 [구상금 청구]

---

## 전 문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지배인 B

피고, 피항소인 1. C

2. D

변 론 종 결 2020. 10. 29.

판 결 선 고 2021. 1. 14.

제1 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 12. 19. 선고 2019가소7833 판결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C은 1,739,130원, 피고 D은 347,83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각 2019. 2. 16.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 유

###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시설관리업, 시설경비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12. 1. 1.부터 2013. 12. 31.까지 서울 구로구 E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관리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을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채용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C은 2012. 1. 1.부터 2012. 10. 31.까지, 피고 D은 2013. 3. 1.부터 2013. 5. 9.까지 각 위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들이 체결한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근로계약서]

#### 제8조 (손해배상)

피고들의 귀책사유로 원고에게 재산상 손상을 가져올 경우 피고들은 그 손해액에 대한 배상책임을 진다.

#### 제10조 (준용규정)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원고의 취업규칙 또는 노동관계법령 및 사회 상규에 따른다.

[취업규칙]

#### 제20조 (준수사항)

직원은 항시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복무에 정진한다.

2. 회사의 기밀을 지키고 회사에 불이익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

#### 제28조 (직원의 책임)

직원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회사에 직·간접으로 손해를 입히거나 재산상의 피해를 입힌 때에는 그 손해와 피해를 전액 변상하여야 한다.

라.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관리하는 기간 동안 피고들 이외에도 F이 2012. 11. 1.부터 2013. 2. 28.까지, G이 2013. 5. 10.부터 2013. 12. 8.까지 각 위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다.

마. 원고는 2017. 3.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과602호로 “원고는 2012. 1. 1.부터 2013. 12. 31.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주체로서 위 아파트를 관리하면서 위 아파트의 회계관련 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과태료 300만 원의 약식 결정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7. 9. 22.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주체로서 위 아파트를 관리하면서 월별로 관리비 등과 잠수입의 징수·사용·보관 및 예치 등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여 이를 그 증빙자료(이하 ‘이 사건 회계서류’라 한다)와 함께 회계연도 종료 후 5년간 보관하지 않은 사실이 소명되므로, 원고에게 구 주택법(2013. 12. 24. 법률 제121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3항 제4호, 제42조 제1항, 구 주택법 시행령(2014. 4. 24. 대통령령 제253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2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과태료 400만 원에 처한다는 결정을 하였으며, 이어진 원고의 항고와 재항고가 모두 기각됨에 따라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과태료결정 사건’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회계서류 등의 인수·인계 및 작성·보관 등을 소홀히 하여 주택법을 위반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과태료 400만 원의 결정을 받았는바, 피고들은 관리소장으로서의 업무를 성실히 이행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져왔으므로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에 따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피고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원고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채무불이행 또는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원고가 부담한 과태료 400만 원에 대하여 각 피고들이 근무한 기간에 따른 비율로 계산하여, 피고 C은 1,739,130원(= 4,000,000원 × 10개월/23개월), 피고 D은 347,830원(= 4,000,000원 × 2개월/23개월)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원고가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 이유는 2012. 1. 1.부터 2013. 12. 31.까지 위 아파트의 관리주체로서 이 사건 회계서류를 회계연도 종료 후 5년간 보관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이 사건 회계서류의 작성연월일, 분실 또는 보관누락경위 등에 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을 뿐더러 원고의 위 관리기간 동안 피고들 외에도 F, G이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고용된 이상 이들의 근무한 기간 동안에 이 사건 회계서류가 인수·인계되지 않았거나 분실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이 사건 회계서류의 작성·보관상의 문제가 발생하였다거나 그것이 피고들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㉔ 특히 원고는 위 과태료결정 사건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H가 그 권한을 남용하여 원고가 위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방해하였고, H가 이 사건 회계서류를 보관하면서 이를 분실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도 이 사건 회계서류의 작성·보관에 대한 책임소재를 밝힐 수 없기 때문에 위 기간 동안에 근무한 전체 관리소장들이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과태료를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고 있는바, 원고 스스로도 당초 피고들이 아닌 다른 관련자가 이 사건 회계서류를 분실하였다고 여겼을 뿐더러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에도 여전히 이 사건 회계서류의 작성 또는 보관상의 문제발생 원인에 관하여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가 제시하는 사정 또는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회계서류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보관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동식, 판사 조서영, 판사 신유리